

## 의료관광 (C-3-3)

### 신청요건

환자 본인 및 동반가족 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)

- ※ 간병인의 경우 환자송출계약국가의 국비지원 환자를 간호하는 간병인만 허용
- ※ 동반가족과 간병인이 환자와 동반 입국하지 않는 경우 의료관광 (C-3-3) 사증 대상에 해당 안 됨

### 의료서류(진단서, 소견서 등) 발급 지정병원

국립외상센터, 국립암센터, 제1, 제2, 제3종합병원, 인터메드병원, 그랜드메드병원, UB송도병원

### 1. 과거 의료관광(C-3-3)으로 국내 2회 이상 방문자 (환자 본인에 한함)

신청인 준비서류
1. 초청장, 진료예약증, 국내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, 외국인환자유치기관확인서 사본
2. 사증발급신청서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)
3. 여권/여권사본 1매
4. 신청요건 입증자료 : 사증 및 출입국 도장 날인면 사본
5. 혼인관계증명서 (사증신청일 기준 45일 이내 발급)
6. 과거 치료 이력을 증빙하는 자료 (병원 진단서 및 체류기간과 치료기록 간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)
7. 경제력 입증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사업자</b> :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li>• <b>직장인</b> :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, 재직증명서</li> <li>• <b>기 타</b> :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 (공동명의 불가)</li> </ul>
※ 상기 경제력 입증 자료가, 대한민국 병원의 통상적인 치료비 및 격리 기간 등을 포함하는 체류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

### 2. 진료(수술)비 한화 1000만원 이상 사전납부자 (환자 본인에 한함)

신청인 준비서류
1. 초청장, 진료예약증, 국내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, 외국인환자유치기관확인서 사본
2. 사증발급신청서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)
3. 여권/여권사본 1매

<p>4. 사전납부영수증(직계가족 명의로 송금 가능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 측 병원 사전납부 확인서, 송금장, 은행거래내역서, 카드 또는 현금매출전표 등 송금인과 수령인이 명시되어야 함</li> </ul>
<p>5. 혼인관계증명서 (사증신청일 기준 45일 이내 발급)</p>
<p>6. 경제력 입증 자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자 :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li>• 직장인 :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, 재직증명서</li> <li>• 기 타 :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로의 은행거래 내역서 (공동명의 불가)</li> </ul> <p>※ 상기 경제력 입증 자료가, 대한민국 병원의 통상적인 치료비 및 격리 기간 등을 포함하는 체류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※ 상기 경제력 입증 자료가, 대한민국 병원의 통상적인 치료비 및 격리 기간 등을 포함하는 체류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</p>

### 3. 국내 수술 예정자 (환자 본인에 한함)

신청인 준비서류
1. 초청장, 진료예약증, 국내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, 외국인환자유치기관확인서 사본
2. 사증발급신청서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)
3. 여권/여권사본 1매
4. 몽골지정병원 진단서 및 한국내 병원 수술예약증
5. 혼인관계증명서(사증신청일 기준 45일 이내 발급)
<p>6. 경제력 입증자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자 :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li>• 직장인 :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, 재직증명서</li> <li>• 기 타 :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로의 은행거래 내역서※ 은행거래내역서는 요약본 및 상세 거래내역서</li> </ul> <p>※ 상기 경제력 입증 자료가, 대한민국 병원의 통상적인 치료비 및 격리 기간 등을 포함하는 체류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</p>

### 4. 급성 중환자, 동반가족 (직계가족에 한함) 및 간병인

신청인 준비서류
1. 초청장, 진료예약증, 국내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, 외국인환자유치기관확인서 사본
2. 사증발급신청서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)
3. 여권/여권사본 1매
4. 혼인관계증명서(사증신청일 기준 45일 이내 발급)

**5. 몽골지정병원 진단서**

※ 의료서류(진단서, 소견서 등) 발급 몽골 지정병원 : 국립외상센터, 국립암센터, 제1, 제2, 제3 종합병원, 인터메드 병원, 그랜드메드 병원, UB송도 병원

**6. 경제력 입증자료**

- 사업자 :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직장인 :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, 재직증명서
-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

※ 상기 경제력 입증 자료가, 대한민국 병원의 통상적인 치료비 및 격리 기간 등을 포함하는 체류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

**동반가족**

1. 사증발급신청서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)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병원 측 초청장
4. 경제력 입증자료 및 재직증명서
5. 혼인관계증명서(사증신청일 기준 45일 이내 발급)
6. 친인척관계증명서 (동반 직계가족에 한함, 사증신청일 기준 45일 이내 발급)

**5. 고령 연금수령자 (환자 본인에 한함)**

**신청인 준비서류**

1. 초청장, 진료예약증, 국내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, 외국인환자유치기관확인서 사본
  2. 사증발급신청서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)
  3. 여권/여권사본 1매
  4. 연금 수령증
  5. 몽골지정병원 진단서
  6. 혼인관계증명서(사증신청일 기준 45일 이내 발급)
  7. 경제력 입증자료
    -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(공동명의 불가)
- ※ 상기 경제력 입증 자료가, 대한민국 병원의 통상적인 치료비 및 격리 기간 등을 포함하는 체류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

## 6.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한국내 수술기록 보유자 (환자 본인에 한함)

신청인 준비서류	
1. 초청장, 진료예약증, 국내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, 외국인환자유치기관확인서 사본	
2. 사증발급신청서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)	
3. 여권/여권사본 1매	
4. 과거 진료기록 및 국내 진료예약증 (진단서, 재진/정기검진 필요성 명시)	
5. 혼인관계증명서(사증신청일 기준 45일 이내 발급)	
6. 경제력 입증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사업자 :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<li>• 직장인 :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, 재직증명서</li><li>• 기 타 :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로 은행거래 내역서</li></ul>	
※ 상기 경제력 입증 자료가, 대한민국 병원의 통상적인 치료비 및 격리 기간 등을 포함하는 체류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	

## 7. 한국내 자선기관 무료수술 예정자 및 동반가족 (직계가족에 한함)

신청인 준비서류	
1. 초청장, 진료예약증, 국내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, 외국인환자유치기관확인서 사본	
2. 사증발급신청서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)	
3. 여권/여권사본 1매	
4. 해당 자선기관 협조요청 공문	
5. 몽골지정병원 진단서	
※ 의료서류(진단서, 소견서 등) 발급 몽골 지정병원 : 국립외상센터, 국립암센터, 제1, 제2, 제3 종합병원, 인터메드 병원, 그랜드메드 병원, UB송도 병원	
6.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 입증서류(사증신청일 기준 45일 이내 발급)	
7. 경제력 입증자료 및 재직증명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사업자 :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<li>• 직장인 :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, 재직증명서</li><li>• 기 타 :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로 은행거래 내역서</li></ul>	
※ 상기 경제력 입증 자료가, 대한민국 병원의 통상적인 치료비 및 격리 기간 등을 포함하는 체류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	

## 동반가족 준비서류

1. 사증발급신청서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)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병원 측 초청장
4. 경제력 입증자료 및 재직증명서
5. 혼인관계증명서(사증신청일 기준 45일 이내 발급)
6. 친인척관계증명서 (동반가족에 한함, 사증신청일 기준 45일 이내 발급)